

#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

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**제 1 조 (목적)** 이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현황 보고)** 주택건설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12조의 규정에(이하 “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.

**제 3 조 (사업계획의 승인신청)** 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22조 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영 제 22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다.

③ 영 제 22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설계도서는 위치도와 평면도로 한다.

④ 사업주체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계획서에 건축대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체가 사인(법인을 포함한다)인 경우

에는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계획서에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담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 4 조 (주택건설 계획등의 타법 저촉여부확인)** 서울특별시,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류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법, 건축 및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 5 조 (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)** 영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.

**제 6 조 (민영주택에의 준용)** 제 3조 제 1항 내지 제 3항, 제 4조 및 제 5조의 규정은 민영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**제 7 조 (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기준)** 영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 8 조 (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신청)** ① 영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다.

② 영 제 31조 제 1항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신청인의 호적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)
2. 공장소제지 증명서
3. 신청인의 신원증명서

**제 9 조 (면허사항 변경신고)**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하여 그 변경 일로부터 10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 10 조 (면허증의 교부)** ① 법 제 27조 제 1항 및 영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시 제 6호서식에 의한 면허 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면허증을 교부한 때

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**(면허취소의 통지) 건설부장관은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 생산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** (주택용자재의 품질 및 규격)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자재의 품질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.

**제13조** (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)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택자재 생산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주택자재 생산업자 실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** (시범주택의 건축) ①건설부장관은 법제29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범 주택건축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1. 시범주택 건축조사서(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)
2. 사업계획서
3. 설계도서
4. 특수공법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명서
5. 대지증명서

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받아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**(증표의 서식) 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.

**부 칙**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(별표 1)**

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의 세부적 기준

시설 별	종 류	규 모
부 대 시 설	전 기	세대당 4kw/H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
	도 로	주요 간선도로: 12미터 이상 보조 간선도로: 8미터 이상 단지내 100세대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: 8미터 이상 단지내 10세대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: 6미터 이상 단지내 10세대 미만인 주로 사용하는 도로: 4미터 이상 다만, 연장 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	상수도	상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대당 급수권 1개이상의 시설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자가 또는 공동급수 시설
	하수도	배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
	통 신	50세대이상에 공중전화 1대이상(기존시설이 있는 지역에 한한다)
주 복 시 설	보안등	노숙 8미터이상의 도로 50미터마다 1개
	어린이 놀이터	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세대에 3.3평방미터의 비율로 1개소를 각 세대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, 최소한 그네, 미끄럼대, 철봉, 모래관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(다만, 10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그 면적을 초과 3세대에 대하여 3.3평방미터의 비율로 증가한다)
	시 장	1,000세대이상일 때 1개소 (다만, 1,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의 료 시 설	공 중 목욕탕	욕탕시설이 없는 주택 500세대 이상을 집단 건설할때 1개소(다만, 1,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공동욕탕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	의료시 설	1,000세대 이상일때 1개소(다만, 1,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의료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	집회소	1,000세대에 330평방미터 비율로 국내 집회시설 1개소(다만, 학교 기타 공중이 집회할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
운동장 및 체육시설	500세대 이상일때 2세대에 3.3평방미터의 비율로 운동장 1개소(다만, 인근에 학교 기타 운동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오물및진개수거시설	아파트의 경우에 한하여 다스트슈트 시설

점토소성 블록 생산업	1. 배합 및 토련 시설	(1) 분쇄기 : 1대 이상 (2) 혼합기 : 1대 이상 (3) 성형기 : 1대 이상 (4) 절단기 : 1대 이상 (5) 콤베야 : 1대 이상
	2. 소성 시설	(1) 레일식터널숫(길이40미터)이상 : 1개소 이상
	3. 기타 필요시설	(1) 토지 : 15,000평방미터 이상 (2) 인공건조실 : 660평방미터 이상 (3) 콤베야, 운반차량, 대차, 수차 등 운반에 필요한 시설

(별표 2)

주택자재 생산업 면허기준

업종별	면 허 기 준	
	시설별	기 준
점토소성 제품 (적연화) 생산업	1. 배합 및 토련 시설 2. 소성 시설 3. 기타 필요시설	(1) 분쇄기 : 1대 이상 (2) 혼합기(토련기) : 1대 이상 (3) 성형기 : 1대 이상 (4) 절단기 : 1대 이상 (5) 콤베야 : 1대 이상  터널 숫(길이 40미터 이상) 또는 운요(14문이상) : 1개소 이상 (1) 토지 : 15,000평방미터 이상 (2) 콤베야, 운반차량, 대차, 수차 등 운반에 필요한 시설

P.C판 생산업	1. 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장치	(1) 밧차프랜트 시설 : 1식 (2) 쇼벨로라 : 1대 이상 (3) 제조라인 : 1식 (4) 파렛트 및 부품 : 1식
	2. 반송 시설	(1) 이동크레인 및 부품 : 1식 (2) 콘크리트 바케스 및 부품 : 1식
	3. 증기양생시설	(1) 보이라스 시설 : 1식
	4. 기타 필요시설	(1) 대지 : 15,000평방미터 이상 (2) 물저장탱크 : 1식 (3) 철근 가공 설비 : 1식 (4) 시험실 : 20평방미터 이상 (5) 압축강도시험기 : 1개 이상 (6) 건조기 : 1개 이상 (7) 공기량 측정기 : 1개 이상

(별표 3)

주택용자재의 품질 및 규격

품 명	규 격				품 질
소성벽돌	(단위 : 밀리미터)				
	구분	규격	길 이	폭	두 겜
	기본형		210	100	60
	장력형		190	90	57
	허용치		±3	±3	±4
소성블록	1. 외부 (단위 : 밀리미터)				
	구분	규격	길 이	높 이	두 겜
	기본형	150	320	154	150
		100	320	154	100
	장력형	150	290	150	90
		100	290	100	90
	허용치		±4	±4	±4
다만, 기본형 150, 기본형 100은 담장이나 넓은 벽면 쌓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.					
1. 압축강도 (단위 : 킬로그램/평방센티미터)					
중 공 블 록					횡 공 블 록
기본블록		횡근용블록			
100 이상		60 이상			

2. 내부(속빈부분)		2. 흡수율 16% 이하	
구 분	기본블록(중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)		횡근용블록(횡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의 최소저름)(센터미터)
	단 면 적 (평방센터미터)	최소폭(센터미터)	
두께 10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	30이상	5이상	5이상
두께 15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	60이상	7이상	6이상

P.C판 판재 및 상판

주택의형,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생산업자가 정하되 그 생산품의 치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.

압축강도  
210키로로그램 / 평방센터미터 이상

(단위 : 밀리미터)

구 분	허 용 치				거 푸 집
	벽 판	스라브판	지붕판	계 단 판	
판 의 길 이	± 5	± 5	± 5	± 5	± 3
판 의 두 겹	± 3	± 3	± 3		± 1
결합포이 레이트 위치	판길이방향	± 3	—	—	—
	두께 방향	상단	± 3	—	—
		하단	± 3	± 3	± 3
비 틀 림	5	5	—	—	—
면 의 凹 凸	6	6	—	—	—
휨	5	5	—	—	—
대각선의길이차	10	10	10	—	—

시멘트벽돌

(단위 : 밀리미터)

구 분	규 격	길 이	폭	두 겹
기 본 형		210	100	60
장 려 형		190	90	57
허 용 치		+ 3 - 2	+ 3 - 2	+ 3 - 2

압축 강도  
50키로로그램 / 평방  
센터미터 이상

시멘트블록

1. 외 부

(단위 : 밀리미터)

구 분	규 격	길 이	높 이	두 겹
기본형	190	390	190	190
	150	390	190	150
	100	390	190	100
장려형	190	290	190	190
	150	290	190	150
	100	290	190	100
허 용 치		± 2	± 3	± 2

압축강도  
40키로로그램 / 평방  
센터미터 이상

2. 내부(속빈부분)

구 분	속 빈 부 분			최 소 살	
	기본블록(중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)	평균용블록(중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의 최소 폭 (센티미터))	평균용블록(중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의 최소 폭 (센티미터))	상은 후 외	기타의 부
				부분	부분
두께 15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	60이상	7이상	6이상	25이상 (밀리미터)	20이상 (밀리미터)
두께 10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	30이상	5이상	5이상	20이상 (밀리미터)	20이상 (밀리미터)

시멘트기와

(단위 : 밀리미터)

구 분	규 격	길 이	폭	두 개
치 수		340	300	15
허 용 치		± 3	± 3	+3 -1

1. 휨, 파괴 하중 80키로그람 이상
2. 흡수율 12% 이하

## 建築士

發行人兼 編輯人 : 姜 大 雄

登錄番號 : 第 라-1251号

登錄日字 : 1967年 3月 23日

通卷 第59号 1973年 10月31日 發行

發 行 所 : 大 韓 建 築 士 協 會  
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 1 街60 - 17

☎ (73) 9491, 9492

印 刷 所 : 高 星 文 化 印 刷 株 式 會 社

〈非 賣 品〉

透視, 鳥瞰圖 問議!!

㉓ 7154, 2436

## 国民住宅債券

代納 및 賣買

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 2 가46 - 5

**京一社** (22-3700 (직통)  
(23-6000 ( " )  
(22-6000 (연결))

口座 No. 서울農協中部支所 3700

허 벽